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회의 비공개 요건 강화 및 회의록 작성 구체화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18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 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일정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의록은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회의 결과의 공개 방식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원회 소속의 국민참여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 국민 의견수렴·조정을 거치는 모든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이 되는 회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비공개사유를 제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

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회의 비공개 요건 강화(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u>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신설></u> <u><신설></u> ④ ~ ⑥ (생략)	제15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 <u>2.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 함)」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²⁾는 공공기관이 보유·

1) 참고로 동 조항은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관리하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를 8가지로 나열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①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 ③ 개인·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³⁾.

그러나 해당 규정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어 회의 공개 여부가 사실상 국가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개정안은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의결할 수 있는 경우를 ①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가지로 한정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회의 비공개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비해 회의 비공개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게 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당시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를 구현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수렴·조정을 거치는 모든 과정과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
3. 개인·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성공조건”, 박은종, 행복한교육 vol.470, pp.47-48, 2021.

다만, 회의 비공개 요건 강화는 회의 운영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아울러,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회의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 헌법」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회의 등)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회의의 공개와 방청)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
3. 개인·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보호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참고로,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부터 제42차 회의('25.1.20.)까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96건이고 그중 2025년 1월 말 현재 비공개 상태인 안건은 26건이며, 공개되어 있는 70건의 안건 중에는 당초 비공개로 의결하였으나 추후 논의를 거쳐 공개로 전환된 안건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⁵⁾⁶⁾.

회의 비공개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이 공개되면 학생,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적정 수준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요건 외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는 비공개 안건의 대부분은 논의과정 중에 있던 중간자료로 최종 확정자료는 공개되어 있다는 입장임.

예시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1차회의 심의, 비공개)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안)(2차회의 의결, 공개)

6)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된 안건의 수는 파악이 어려움.

2. 회의록의 작성 등(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5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u> <u>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u> <u>②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u> <u>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u> <u>2.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u> <u>3. 제15조제4항에 따른 회의참석자의 성명</u> <u>4. 상정안건,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u> <u>5. 표결 수</u> <u>6. 위원장의 보고</u> <u>7.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공표한다.</u> <u>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u>

	<u>회의록에 기재한다.</u> <u>⑤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 제1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제18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u>
--	--

공공기관 기록물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⁷⁾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⁸⁾에 따라 해당 회의록에는 일시 및 장소, 참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

석자 및 배석자 명단,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 회의개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5조제5항 역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⁹⁾에 대한 회의록¹⁰⁾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회의일시·장소, 출석위원 성명 등 회의개요,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의결 사항 등 회의결과와 함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¹¹⁾.

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9)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가 아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포함되지 않음.

10) 2025년 1월 말 기준 제1차~제42차 회의의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

11)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회의록 등의 작성 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경우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하는 회의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명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4. 상정안건명
5. 주요 안건내용 및 토론내용
6. 의결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회의록 등의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편, 현재 공개되고 있는 회의록은 속기록 방식이 아니라 회의내용을 정리한 형태이며, 발언자의 성명이 익명으로 처리되는 등 회의록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해당 규정을 산하 자문기구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민참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임.

참고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운영규칙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¹²⁾¹³⁾,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고,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공개 회의의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제출하여야 함¹⁴⁾. 국가교육위원회는 회의록과 속기록 외에 별도로 녹음기록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음.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회의록 작성·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① 회의록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2)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회의록 등의 작성 등) ③ 간사는 회의록과 별도로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의 해당 회의일로부터 21일의 기한 이내에 회의록의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9-10쪽 참고) 후단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해당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하나를 생산하여야 함.

14)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회의록 등의 공개) ② 위원회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속기록 형태로 작성하게 하고(제2항), ② 회의록을 회의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하며(제3항), ③ 회의록 및 녹음 기록을 삭제할 수 없게 하면서(제4항), ④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보존 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회의 흐름과 주요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회의록에 포함하는 데에 이견이 없으나, 발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속기 방식의 회의록은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심층적인 토의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의사결정 기능이 없는 자문기구까지 속기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유사 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회의 속기록을 작성·공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임.

참고로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속기록과 회의록을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개별 인권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현재 회의록은 회의내용을 정리한 형태로 공개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 위원들의 확인을 거친 후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회의록이 속기록 형태로 공개되어 위원들의 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차기 회의 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표되어야 함.

아울러,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¹⁵⁾은 위원회 위원이 회의록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회의록과 속기록의 발언에 대하여 ‘자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되 발언의 ‘취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회의록과 녹음기록의 내용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면서 발언을 통해 발언을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 심사 결과에 따라 회의록 보고 절차 및 회의록 정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칙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15)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회의록 등의 작성 등) ⑤ 위원회 위원이 회의록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

문 의 처
02)6788-5186